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

- (주)강원랜드 건축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2020. 01.



(주) 강 원 랜 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회사실적	실적	건수	절대평가	12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금액		13	12억이상	12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12.0	10.8	9.6	8.4	7.2																						
							13.0	11.7	10.4	9.1	7.8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절대평가	4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내진 성능평가, 실시 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정지기간	절대평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내진성능평가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별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평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		절대평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최초 출원인이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p><건설신기술, 특허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r> <td>실적건수 (건)</td> <td>50이상</td> <td>5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70이상</td> <td>7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5이상</td> <td>5미만 1이상</td> <td>1미만 0.5이상</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투자실적		절대평가	8	<p>최근3년간(공고일기준)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p> <table border="1"> <tr> <td>3%이상</td> <td>3%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이상</td> <td>2%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8.0	7.2	6.4	5.6	4.8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8.0	7.2	6.4	5.6	4.8																													

[시행 2019.10. 8.][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